	보도자료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장 한 과장(02-2100-4090)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최윤정 과장(02-2110-1520)
<b>관계부처 합동</b>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2016년 7월 1일(금) 조건 (6.30. 15: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고상범 팀장(02-2100-2620)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신산업과 유성완 과장(02-2110-284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044-202-2420)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서영석 과장(044-200-2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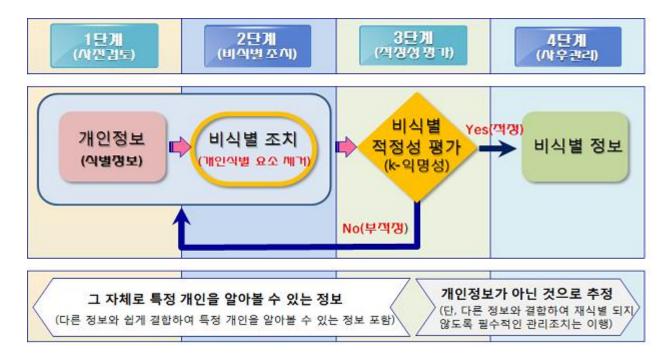
# 9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발표하였다.
  - \*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 □ 그간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개념이 모호하고, 또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해 왔다.
- 또한, 학계와 언론에서는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T 기술과 융합 산업의 발전에 따른 데이터 이용 수요에 대응하는데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 □ 이에,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ICT 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데이터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하여 이용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조치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또한, 비식별 조치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조치사항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 **첫 번째,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없이 활용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며,
- 두 번째, 비식별 조치 단계에서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다양한 비식별 기술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개인 식별요소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 세 번째, 적정성 평가 단계에서는 비식별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외부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 수단인 'k-익명성\*'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 \* 동일한 값을 가진 레코드를 k개 이상으로 하여 특정 개인을 추론하기 어렵도록 함. 예를 들어, k값을 5로 정하여 비식별 조치하였다면 데이터 셋 내에 개인 식별 요소가 없음은 물론이고, 최소 5개 이상의 레코드가 동일하여 개인식별이 어려움
  - 마지막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비식별 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사항을 명시하였다.
    - \* 이용목적 달성 시 파기,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 재식별 시 처리 중단 및 파기 등 **'비식별 조치 절차 및 사후관리'**



- 부처별로 **전문기관**\*(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토록 하는 등 금번 가이드라인의 지원체계도 마련하였다.
  - \* 행정자치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 \*\* 미래부는 '16년 중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약 110개사를 선정하여 빅데이터 활용 솔루션 적용 및 컨설팅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할 예정(참고3 참조)
  - □ 아울러, 금번 가이드라인과 함께 발간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통합해설서"에서는 개인 식별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한 정보(=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 \*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를 '비식별 정보(미국)', '익명정보(영국)' 로 정의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
  - 또한,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재식별\*\*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는 반드시 준수**토록 하였다.
    - \* 일단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되, 개인정보라는 반증이 나오면 개인정보로 본다는 뜻
- \*\* 비식별 정보가 새로운 분석기술 적용이나 다른 추가적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다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을 말함
  - 현행법에 규정된 제재수단을 안내하여 비식별 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비식별 정보를 고의로 재식별하여 이용?제공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재식별 된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이내 과징금 부과 가능)

- □ 이번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과 '법령 통합 해설서' 발간에 따라 산업계의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빅데이터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매년 3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고급 데이터 분석가 등 **IT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세계는 소프트 파워를 통해 기계와 제품이 지능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 중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인 **빅데이터 산업은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 "금번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발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빅데이터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참고 1 질의 및 응답

#### 이 가이드라인은 무슨 목적으로 발간하였는지 ?

그간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개념이 모호하고, 또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해 왔음.

또한, 학계와 언론에서는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T 기술과 융합 산업의 발전에 따른 데이터 이용 수요에 대응하는데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음.

이에,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ICT 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데이터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게 된 것임

※ 다양한 비정형(그림, 영상, 음성, 문서 등) 데이터가 복합적으로 결합?분석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이용 목적을 설정하는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구체적 이용 목적을 미리 정하여 동의를 받은 것이 곤란

#### 이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

본 가이드라인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의 비식별 조치 기법 및 사례\*\*를 참조하여 마련하였음

\*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 미국, 영국 등에서도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된 정보를 각각 '비식별 정보(미국)', '익명정보(영국)'로 정의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 조치'는 외국과 비교하면 어떠한 수준인지 ?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 조치'는 EU의 최신 익명화 기술과 평가방법을 참조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EU의 익명화 수준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특히 적정성 평가 시 k-익명성을 반드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평가절차에 대하여는 EU보다 엄격한 수준임

또한, 우리나라는 익명화된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는 EU와는 달리 비식별 정보 공개를 금지하여 재식별 위험성을 더욱 낮추고 있음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 조치'는 **EU의 '익명화' 수준과 동등하거나** 더욱 엄격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음

#### 이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

그동안 기업 등에서는 개인정보 개념이 모호하고, 또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해 왔음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가 복합적으로 결합 분석되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그 자체가 활용되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매년 30% 이상 급성장 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 분야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고급 데이터 분석가 등 IT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감염병?범죄발생 예측 등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2 참조)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현재 각종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특정 대기업에만 하고 중소기업에는 불리한 것이 아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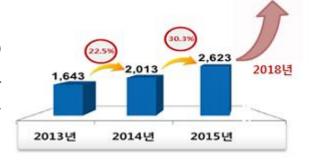
-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이나 통신 등 특정 대기업에 집중된 빅데이터가 비식별 조치 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빅데이터 활용에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위해 방통위, 미래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개인정보 비식별 지원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분야별 전문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미래부의 경우 2016년도 중 약 110개사\*를 선정하여 빅데이터 활용 솔루션 적용 및 컨설팅 지원, 전문가 기술 멘토링 등을 지원할 예정임
- \* 오프라인 기업, 인터넷 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군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선정

### 참고 2

### 기대효과

### □ 빅데이터 관련 시장 규모 및 전망(2015 빅데이터 시장조사, 미래부 등)

'15년 기준, 국내 빅데이터 }규모는 2,623억원(전년대비 30.3% 증) IoT, 클라우드와 빅데이터간 연계가 느어지는 '18년부터 빅데이터 활용 는 증가 전망



### □ 국민편익 기대효과

- ① 고급 데이터 분석가 등 양질의 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 ※ 향후 5년 내 빅데이터 기반 산업 분야에 **약 52만개 일자리 창출** 전망(한국경제연구원, 16.6월)
  - ② 빅데이터 기반의 IT강소기업 발전으로 IT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 제공
- ※ 특히, 금융이나 통신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빅데이터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제조, 물류·유통, 금융, 의료 등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이 마련 박데이터 활용은 제조업, 물류/유통 비IT 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



- ④ 감염병, 범죄발생 지역 등의 예측·예방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 ※ 지난 13년간의 식중독 발생사례 분석, 예측정보 생산 및 관계기관에 제공 ⇒ 손씻기 등 홍보로 식중독 예방 ⇒ '15년 연간 환자수가 최근 5년 동기 대비 19.9% 감소
  - ⑤ 사회간접자본의 운영 효율성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 ※ (예시)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입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습 정체구간, 사고구간 및 원인 분석을 통해 도로구조 개선 및 휴게공간 설치 등 고객서비스 개선 기대

## 참고 3 소기업?스타트업 등 빅데이터 활용 지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빅데이터 시대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 스타트업의 빅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추진

#### □ 지원 방안 및 대상

- 새로운 제품 개발 등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수요는 있으나 비용과 기술 문제 등으로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선정·지원
  - '16년 지원 규모:110개社, 10회 교육지원
- 오프라인 기업, 인터넷 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다양한 기업군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선정,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적용 방법 컨설팅 및 교육 제공

#### □ 지원 내용

-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솔루션 적용 지원(50개社)
- 제품·서비스 기획, 개발·제조·품질·운영, 마케팅·영업·서비스 등 각 비즈니스 단계별로 빅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 활용 지원 ※ 각 비즈니스 단계별로 비식별 조치가 필요한 공통 영역에 대한 컨설팅 지원

-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전문가 기술 멘토링(30개社)
-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의 창업과 사업화를 위한 빅데이터 및 비식별 조치 기술 전문가 멘토링 제공
  - 중소기업 데이터 활용 지원(30개社)
- 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스타트업 및 중소사업자의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데이터 구매 및 가공지원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적용 방법 컨설팅 등
    - K-ICT 빅데이터센터 활용 지원 및 이용교육(년 10회)
- K-ICT 빅데이터센터 인프라 활용 컨설팅·창업·서비스 개발·연구를 위한 사용자 및 비식별 조치 교육 제공

### □ 추진 일정

○ 계약 체결 및 계약(6월~), 사업 추진(7월~12월), 성과보고회(12월)